

# 2020 식품산업육성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지침(보완)

농식품유통과



## □ 식품산업육성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보완

구분	당 초	변 경
추진방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농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유통·판매망 부족,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맞춤형 지원 필요</li> <li>-농식품제조가공 업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원 효과 극대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농식품제조가공업체에 지원 필요</li> <li>-제품의 얼굴인 「포장재」 디자인 개발로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동기 유발 등 판매를 촉진하여 제품경쟁력 강화</li> <li>-옐로우시티 이미지와 지역특색을 포장 디자인에 반영하여 타 지역 제품과 차별성 및 옐로우시티 홍보 효과를 높임</li> </ul>
근거법령	-	-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, 제23조의2
사업량	-2개소	-4개소
사업비	-개소 당 20,000천원 (군비10,000 자담 10,000)	-개소 당 10,000천원 (군비 5,000, 자담 5,000)
사업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식품제조가공업·전통주 제조업 영업등록증 받은 법인</li> <li>-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실적 있는 업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식품제조가공업·전통주 제조업 영업등록증 받은 법인</li> <li>-<u>삭제</u></li> </ul>
사업내용	-R&D, 브랜드, 마케팅, 포장재(포장용기)디자인 개발	-포장재(포장용기)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
자격요건	-주원료의 50%이상 관내 농·특산물 사용하는 업체	-관내 농·특산물 사용하는 업체

# 식품산업육성 맞춤형컨설팅 지원사업

## I 추진방침

-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지원 필요
- 제품의 얼굴인 「포장재」 디자인 개발로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동기 유발 등 판매를 촉진하여 제품경쟁력 강화
- 옐로우시티 이미지와 지역특색을 포장 디자인에 반영하여 타 지역 제품과 차별성 및 옐로우시티 홍보 효과를 높임

## II 근거법령

-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 및 제23조의2(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등)

## III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0. 3월 ~ 11월
- 사업량 : 4개소
- 사업비 : 40,000천원(군비 50%, 자담 50%)
  - 개소 당 10,000천원(군비 5,000, 자담 5,000)
- 사업대상
  -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·전통주제조업 영업등록증 받은 법인 또는 업체(제외 : 전통식품인증업체 및 도지사품질인증업체)
- 자금용도
  - 사업비는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만 집행이 가능하고, 시설 개·보수, 기계장비류 구입 등 자본성 자금 집행 불가
- 사업내용
  - 포장재(포장용기포함)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(단순포장지 제작 불가)
- 자격요건
  - 관내 농·특산물을 사용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을 제조·가공하는 업체
  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

## IV 추진내용

- 세부내용
  - 포장재(포장용기포함)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제작
  - 디자인 시안에 ‘옐로우시티’ 이미지 및 지역특색 반영
  -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
- 「관광명소와 컬러푸드를 연계한 기념상품 개발」 시책 참여 업체 우선선정
- 지원제외 : 단순포장지 및 상품안내 카탈로그·전단지·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
- 개발업체 자격요건

구분	자격요건
포장재 디자인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‘디자인전문회사’로 종합 또는 시각/포장디자인 분야 신고업체</li> <li>※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(<a href="http://designfirm.kidp.or.kr">http://designfirm.kidp.or.kr</a>)에서 검색</li> </ul>

## V 세부추진계획

- 추진절차 : 신청접수 → 장성군 원예,유통·가공정책분과위원회 심의  
→ 대상자 선정 → 보조금교부신청 → 보조금교부결정 →  
사업추진 → 보조금청구 → 보조금지급
- 선정기준 :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 
고득점 순으로 선정

### <구비서류 및 증빙자료>
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, 과업지시서
- 식품제조가공업·전통주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해당할 경우),  
원료 구입처 증빙자료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농지원부 등) 기타 사업계획서에  
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

### □ 사업정산

- 보조사업 전용 계좌(법인은 법인명의, 비법인은 대표자 명의)사용
-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 
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함

# 식품산업육성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

신청업체	업체명		사업자등록번호 (설립연월일)	
	대표자명			
	생년월일		전자메일	
	업태		생산품목(제품명)	
	종업원 수		연락처	
	소재지(주소)			
	담당자명		연락처	

신청금액	총사업비	원	
	군비(50%)	원	자부담(50%) 원
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</li> <li>▪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,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</li> <li>▪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신청 조기 마감 또는 추가모집 가능</li> <li>▪ 사업신청서 등 업체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,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</li> </ul>
------	--

위와 같이 2020년 식품산업육성 마케팅(포장디자인)지원사업을 신청하며,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.

2020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장성군수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계획서 1부</li> <li>2.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) 1부</li> <li>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</li> <li>4.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(유효기간 이내) 각 1부</li> <li>5. 영업신고증(사본) 1부</li> <li>6.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(별도 요청시 제출)</li> </ol>
------	---

# 사업 계획서

## 1. 사업 필요성 및 동기

- 
- 

## 2. 업체현황

○ 업체명 : (대표자 : )

※ 붙임 :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전통주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

○ 위 치 :

○ 규 모 : 동/ m<sup>2</sup>

○ 참여회원수 : 명

※ 붙임 : 참여자명단

○ '19년도 매출액 : 천원

※ 붙임 :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
○ 생산품목 :

○ 주 원 료 :

○ 주원료 구입처 :

※ 붙임 : 원료 구입처 증빙자료

○ 주요판매처 :

○ 생산설비 보유현황

기자재 및 시설명	보유대수	구입가격(원)	구입연도	용도	보유장소

○ 보조사업 지원받은 내역(최근 5년간, 정부 및 지자체)

번호	지원기관	사업명	참여연도	지원액(원)	지원내용
1					
2					
3					

### 3. 사업계획

○ 사업비 :            천원(군비            , 자담            )

○ 산출근거

항목	세부내역	단가	수량	금액(원)	비고
합계					

※ 붙임 : 견적서

○ 세부사업 추진계획(구체적 추진일정)

- 
- 
- 

○ 판로대책(마케팅)

- 
-

